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1. 12. 4

다. 상 정 일 자 : 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 12. 26)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규제완화방침 및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의 재원으로 보조하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법령의 근거없이 보조사업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의 활성화와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교부조건을 폐지함(안 제7조 제2항)

3. 검토의견

이번 조례개정은 보조금관리조례중 규제성격이 강한 조항에 대하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폐지키로 의결됨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폐지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